# |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 해상화물 적하목록 길라잡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하목록 제출 자료는 보세화물관리가 시작되고 종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담당하는 선사, 포워더의 실무자는 관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생소한 용어와 추상적인 표현 등으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에서는 이러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 차례에 걸쳐 책자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2016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개통된 이후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선사 등의 요청이 있어 이번에 적하목록 정정 안내서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적하목록 업무를 처음 접하는 선사 및 포워더의 실무자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나, 적하목록 업무가 생소한 세관직원도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제2장은 선사 및 포워더의 영업등록과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포워더 실무자들께서는 관련 절차를 참고하시어 등록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적하목록 제출과 정정, 환적화물의 이동 등 실무자가 반드시숙지해야 할 핵심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민원 문의가 많은 사항은 TIP으로 따로 추가하였습니다.

제6장은 적하목록 제출시기 등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항과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최근 3년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44-1285)로 접수된 적하목록 관련 문의사항을 분석하여 주제별·빈도순 Q&A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산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상담전에 Q&A 목 차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면 빠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책자는 적하목록 업무에 관해 업체 및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CONTENTS



# |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 해상화물 적하목록 길라잡이

제 1 장	용어정리	6
제2장	영업등록	10
제 <b>3</b> 장	입항 적하회물	14
제 <b>4</b> 장	출항 적하회물	28
제5장	환적화물	34
제6장	벌칙	38
[부 록] 적	하목록 Q&A	41

제**1**장 용어정리

#### ▶ 적하목록

- O 한자로는 '積荷目錄'으로서 쌓은(적재한) 짐(화물)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 로는 'Cargo Manifest'로서 화물을 분명히 나타낸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 \* 積 : 쌓다 적, 荷:짐 하, Cargo:화물, Manifest:나타내다, 분명해지다
- O 관세법에서는 적하목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의 정의에 따르면,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 ▶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작성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자로 외국무역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를 말한다.

####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 가 수출입물품을 집하 · 유송하는 유항선사
- 나,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을 용선한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
- 다.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대리점 포함)
  - ☞ 실제 적하목록을 작성하는 자로 통상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선사의 국내 법인(본사, 지사), 대리인(파트너)을 말한다.

(예1) A선사 미국지사가 발행한 BL에 따른 적하목록  $\rightarrow$  A선사 국내지사 작성

- (예2) 미국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에 따른 적하목록
  - → 미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국내 파트너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

#### ▶ 하역

화물을 본선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본선에 올려싣는 적재작업을 말한다.

#### ▶ 하역장소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포함)을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 ▶ 하선장소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 Master BL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 ▶ House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 화물관리번호

MRN(적하목록관리번호: Manifest Reference No.)에 MSN(Master BL 일련번호: Master BL Sequence No.)과 HSN(House BL 일련번호: Master BL Sequence No.)를 조합한 번호로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수입신고 등 모든 세관절차에서 핵심 Keyword로 사용된다.

#### ◇ 적하목록 관리번호

1	8	А	В	С	D	А	1	2	3	1
	:연도 자2)	1	보사보호 보사당.			(	일련 영문 및	번호 숫자 4	)	입항(I) 출항(E)

♦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 관리번호 + Master BL일련번호 + House BL일련번호

MRN	MSN	HSN	계
18ABCDA123I	0089	0001	15 or 19자리

#### ▶ 산물(Bulk)

일정한 포장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수량관리가 불가능 한 물품을 말한다.

#### 검사대상화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선 별한 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을 말한다 ※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 ▶ 환적화물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 세관화물정보시스템

적하목록, 적재·하선(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 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 ▶ 전자문서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 제**2**장 영업등록

- 1. 부호신고(등록) 필요성
- 2. 업체부호 신고(등록)
- 3. 의무사항

#### ▶ 부호신고(등록) 필요성

적하목록의 작성과 제출은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하여야 한다

#### ▶ 업체부호 신고(등록)

가. 선박회사 (해운대리점)

#### ◇ 부호신고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 부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 ♦ 관련근거

-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선사부호 신고)

#### ◇ 제출서류

- 선박회사부호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이나 해운대리점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 제출방법

– 세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 유의사항

- 다른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신고 불가
- 최초 등록 후 변경사항(대표자,주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 제출
  - ☞ 위반 시 2배만원 이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 최초 등록 후 갱신 절차 없음

#### 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 ◇ 등록대상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보세화물 취급 및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 최근 1년간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 다만, 신규업체의 경우는 향후 적하목록 제출을 주로 할 세관을 말한다.

#### ♦ 관련근거

-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등록요건

- 관세법 제17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화물우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제출서류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 자산평가 증빙서류(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업체는 6억원이상)
- 임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적하목록 전송 프로그램 사용 확인서)
   예) KT-NET, KL-NET, 양재아이티, 한국비즈넷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국세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 유의사항

- 다른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신고 불가
- 최초 등록 후 변경사항(대표자,주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 제출
  - ☞ 위반 시 2배만원 이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 최초 등록 후 갱신

#### ▶ 의무사항

#### 가,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 O 선사, 항공사 등 운수기관은 적하목록 등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자료를 취합할 때에는 적하목록작성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O 선사, 항공사 등은 공항 또는 부두내에서의 물류신속화와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수출입 화주,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두운영공사 등 이해관계자에 게 취합된 적하목록 자료와 하선(기) 작업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 O 선사, 항공사 등은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기한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선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약, 총기류 등 국내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입항 적하화물

#### 제1절 적하목록 취합시스템

- 1. 시스템 개요
- 2. 사용자
- 3. 오류검증

#### 제2절 입항적하목록

- 1. 작성요령
- 2. 입항적하목록 제출
- 3. 입항적하목록 심사
- 4. 입항적하목록 취하
- 5. 입항적하목록 정정

#### 제3절 하선

- 1. 하선신고
- 2. 하선장소
- 3. 하선장소 신고
- 4. 하선반입 기간
- 5. 하선신고 심사
- 6. 하선결과이상보고

#### 제1절 적하목록 취합시스템(MFCS: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 ▶ 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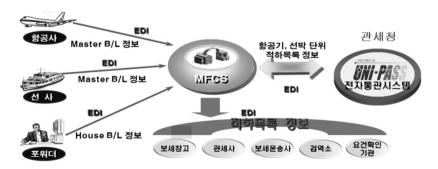
선사, 포워더가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적하목록 취합 및 제출 시스템

#### ▶ 사용자

적하목록작성책임자로서 선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취합시스템에 접속하여 BL등 관련 정보로 적하목록을 작성(전송)하고 적하목록제출의무자로서 운항선사는 최종적으로 취합된 적하목록을 세관에 전송

#### ▶ 오류검증

입항적하목록은 1차 마감이 최종 마감이며 1차 마감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수정 하여 재전송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즉시 최종 마감



#### 제2절 입항적하목록



#### ▶ 작성 요령

#### 가. 작성대상

- 수입화물, 환적화물, 일시양륙화물

#### 나. 주요항목

#### ① 화물구분 및 화물속성

화물	구분	화물속성	신고대상
	일반(1)	_	수입화물(BWT포함)
	글인(()	1	국내 개항간 외항선으로 운송하는 수입화물
۸۵۱		_	일반 환적회물
수입	화적(T)	1	일관운송 환적화물(Sea↔Air등)
	왼식(I)	2	수출화물로서 부득이하게 국내개항에 일시양륙
		3	국제우체국에서 우편물로 환적반출할 물품
————————————————————————————————————	일반(E)	_	수출회물
수출	환적(R)	_	환적화물

### [예시] 홍콩에서 부산항에 반입된 물품을 BL상 최종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외항선에 의해 다시 운송하고자 하는 수입화물

세	관	화물구분	화물속성
HYF	입항	수입 일반화물(I)	'1'(국내 개항간 운송)
구신	출항	수출 환적화물(R)	공란
2	l천	수입 일반화물(I)	п

#### [예시] 홍콩에서 부산항에 반입된 물품을 인천공항으로 내륙운송하여 환적하는 화물

세 관	화물구분	화물속성
부산세관	수입 환적화물(T)	'1'(Sea & Air 환적화물)
인천공항	수출 환적화물(R)	공란

#### ② BL 타입

구 분	표시방법	비고
Master BL만 있는 경우	S(Simple)	
Master BL에 종속된 House BL이 있는 경우	C(Consol)	혼재화물 적하목록 별도 제출
공컨테이너가 수입되는 경우	E(Empty)	

#### ③ 선하증권번호(Bill of loading NO)

Master BL번호(선사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House BL번호(포워더 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총 20자리 범위내에서 기재

#### ④ 적재항(Port of Loading)

선박에 물품이 적재된 항구코드로 ISO(국제표준화) 지역코드 5자리 기재예시) LONGBEACH: USLGB

#### ⑤ 수하인(Consignee)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의 소지자(지시식 인 경우는 'To Order~'를 기재)

#### ⑥ 통지처(Notify party)

물품도착통지처, Consignee가 'To Order~'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Same as above'등으로 기재후 이하 생략 가능

#### ⑦ 송하인(Shipper) 물품의 국제우송의뢰인

#### ⑧ 품명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품명을 기재하고 200자 초과할 경우 맨 마지막에 'ETC'기재

☞ 세관의 품명 전산오류 사후 검증방식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품명오류 전산심사 과태료부과 예시

오류유형	예시	과태료
숫 자 등	0, 11, A, B, AAA 등	부 과
특수문자	!, @, #, *, ? 등	부 과
광의어	Sample, Part, Goods, Gift 등	유 보
 상 표	Nike, Adidas, Burberry 등	유 보

#### ⑨ 컨테이너번호(Container NO)

- 11자리 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복수의 경우 모두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IJI.K'로 표시

#### 《컨테이너 종류 구분 코드》

코드	내용 / 종류	코드	내용 / 종류
AS	air/surface container	RE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BK	dry bulk container – pressurized	RS	thermal container – self–powered refrigerated/heated
BU	dry bulk container – nonpressurized, box type	RT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and heated
GP	general purpose container without ventilation	SN	named cargo container
Н	thermal container – insulated	TD	tank container— for dangerous liquids
HR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or heated	TG	tank container- for gases
PC	platform(container)– folding(collapsible)	TN	tank container— for nondangerous liquids
PF	platform(container)— fixed	UT	open-top container
PL	platform(container)– incomplete superstructure	VH	general purpose container with ventilation

#### ⑩ 포장개수

운송용 포장종류의 구분기준에 따라 BL상 포장개수 기재

- 산물(벌크)의 경우 '0'으로 기재
- 포장종류가 2종 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 총중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 기재

#### 《포장종류 코드》

단위	내용	단위	내용
ВА	통	НН	휴대품
BC	맥주 박스 모양의 상자	ΙZ	주철괴
BE	다발, 꾸러미 등 묶음 포장단위	NT	그물
BG	자루, 부대	OU	외포장이 없는 개, 두, 필, 대, 기, 척, 착등
BJ	양동이	PG	판
BL	광목, 원단 등 감이놓은 상태	PI	파이프
BR	막대	PU	뚜껑없는 칸막이 상자
BV	전구모양의 병	RL	줄감는 틀
CA	캔	RO	두루마리
CH	나무상자 괘	SK	골조 상자
CJ	관	VG	기체상태 벌크
CL	코일, 나선형으로 똘똘 감은 것	VL	액체 상태의 벌크
CR	Wooden Box, Wooden Case 대체용기	VO	덩어리 상태의 벌크
CS	그릇, 상자, 케이스	VQ	액화가스상태의 벌크

단위	내용	단위	내용
CT	판지로 만든 상자	VR	곡물벌크
DR	드럼통	VT	기타 벌크물품
GT	기타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물품	VY	분말벌크

#### ① 총중량

운송용 포장 중량을 포함한 물품중량 합계를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2자리(3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기(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중량은 제외)

☞ BL 타입이 공컨테이너 ' E ' 일 경우에는 수량 0. 중량 0 으로 적하목록 제출

#### ⑪ 총용적

운송용 포장을 포함한 물품 용적을 CBM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3자리(4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기

#### ③ 특수화물코드

위험물품(IMDG위험물품코드), 동물검역대상(QA), 식물검역대상(QP), 보냉(온)물 품대상(RF)인 경우 기재

※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모두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NO'기재 또는 공란으로 제출

#### 《국제해상위험물 규칙 IMDG 코드》

코드         코드명         코드명           1.1         대량폭발위험이 있는 화약류         1.2         대량폭발하여 비상위험이 있으나 폭발효과 적은 화약류           1.3         대량폭발하여 화재위험 있으나 폭발효과 적은 화약류         1.4         위험이 없는 화약류           2.1         인화성 고압가스         2.2         비인화성 고압가스           2.3         독성 고압가스         3.1         저인화점액체(인화점 -18C 미만)           3.2         중인화점액체(인화점 -18C - 23C 미만)         3.3         고인화점액체(인화점 23C - 61C 미만)           4.1         가연성 고체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발생하는 물질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물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BUP         BULK UNIT PROGRAM         DIP         DIPLOMATIC MAIL					
1.1     내당폭발위임이 있는 화약류     1.2     폭발효과 적은 화약류       1.3     대량폭발하여 화재위험 있으나 폭발 효과 적은 화약류     1.4     위험이 없는 화약류       2.1     인화성 고압가스     2.2     비인화성 고압가스       2.3     독성 고압가스     3.1     저인화점액체(인화점 -18C 미만)       3.2     중인화점액체 (인화점 -18C - 23C 미만)     3.3     고인화점액체 (인화점 23C - 61C 미만)       4.1     가연성 고체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물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코드	코 드 명	코드	코 드 명	
1.3     효과 적은 화약류     1.4     위험이 없는 화약류       2.1     인화성 고압가스     2.2     비인화성 고압가스       2.3     독성 고압가스     3.1     저인화점액체(인화점 -18C 미만)       3.2     중인화점액체 (인화점 -18C - 23C 미만)     3.3     고인화점액체 (인화점 23C - 61C 미만)       4.1     가연성 고체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물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M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1,1	대량폭발위험이 있는 화약류	1.2		
2.3     독성 고압가스     3.1     저인화점액체(인화점 -18C 미만)       3.2     중인화점액체 (인화점 -18C - 23C 미만)     3.3     고인화점액체 (인화점 23C - 61C 미만)       4.1     가연성 고체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물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1,3		1.4	위험이 없는 화약류	
3.2     중인화점액체 (인화점 -18C - 23C 미만)     3.3     고인화점액체 (인화점 23C - 61C 미만)       4.1     가연성 고체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물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21	인화성 고압가스	2,2	비인화성 고압가스	
3.2     (인화점 -18C - 23C 미만)     3.3     (인화점 23C - 61C 미만)       4.1     가연성 고체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물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M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2,3	독성 고압가스	3.1	저인화점액체(인화점 -18C 미만)	
4.3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물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3.2		3.3	. — . —	
4.3       발생하는 물질       5.1       산화성 물실         5.2       유기과산화물       6.1       독물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4.1	가연성 고체	4.2	자연발화성 물질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4.3		5.1	산화성 물질	
8 부식물질 9 유독성물질 AOG AI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5.2	유기과산회물	6.1	독물	
AOG A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6.2	전염성 맹독물	7	방사성 물질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8	부식 물질	9	유독성 물질	
	AOG	ARCRAFT ON GROUND	ATT	FRT ATTACHED TO AWB	
BUP BULK UNIT PROGRAM DIP DIPLOMATIC MAIL	AVI	LIVESTOCK	BIG	LARGE/BULKY CARGO	
	BUP	BULK UNIT PROGRAM	DIP	DIPLOMATIC MAIL	

코드	코 드 명	코드	코 드 명
EAT	FOODSTUFFS	EHU	EXPRESS HANDLING UNIT
FIL	UNDEVELOPED FILM	HEA	HEAVY CARGO
HEG	HATCHING EGGS	HMC	HMC PRODS, INTO LHR
HUM	HUMAN REMAINS	ICE	DRY ICE
IOR	IMMED,OPS REQUIREMENT	LHO	LIVING HUMAN ORGANS
MAG	MAGNETIZED MATERIAL	MDU	MAIN DECK ULD
MUW	MUNITIONS OF WAR	NWP	NEWSPAPERS/MAGAZINES
OBX	OBNOXIOUS CARGO	OFD	OFFLOAD CARGO
OSI	OTHER SPECIFIC INFO	PBL	PERM BKNG (LOOSE)
PBU	PERM BOOKING (ULD)	PER	PERISHABLE CARGO
PRW	PREMIUM CARGO	QA	동물검역 물품
QP	식물검역 물품	RAC	RESERVED AIR CARGO
RCL	CRYOGENIC LIQUIDS	RCM	CORROSIVE MATERIAL
RCX	EXPLOSIVES 1.3C	REX	EXPLOSIVE
RF	보온/보냉 물품	RFG	FLAM COMPRESSED GAS
RFL	FLAMMABLE LIQUID	RFS	FLAMMABLE SOLID
RFW	DANGEROUS WHEN WET	RGX	EXPLOSIVES 1,3G
RHF	HARMFUL TO FOOD	RIS	INFECTIOUS SUBSTANCE
RMD	MISC. DANGEROUS GDS	RNG	NON-FLAM COMP. GAS
ROP	ORGANIC PEROXIDE	ROX	OXIDIZER AGENT
RPB	POISON	RPG	POISONOUS GAS
RRW	RADIOACTIVE CAT. 1	RRY	RDIOACTVE CAT2 CAT3
RSB	POLYSTYRENE BEADS	RSC	SPONTAIN, COMBUSTBLE
RXB	EXPLOSIVES 1.4B	RXC	EXPLOSIVES 1.4C
RXD	EXPLOSIVES 1.4D	RXE	EXPLOSIVES 1.4E
RXG	EXPLOSIVES 1.4G	RXS	EXPLOSIVES 1.4S
SSP	SHORTSHIPPED CARGO	STF	SPECIFIED T/SHMT FRT
ULD	COMPLETE ULD SHIPMNT	VAL	VALUABLE CARGO
VOL	VOLUMETRIC CARGO	WET	WET ICE
XPS	PRIORITY SMALL PKGS		

#### 입항적하목록 제출

#### 가. 해상화물 입항적하목록 제출시기

근 거 리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원 거 리
입항전	입항 24시간 전

<sup>※</sup> 해상 입항적하목록 선적 24시간전 제출제도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유예 중에 있음

#### 나, 위반시 제재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 벌금(과실 200만원 이하 벌금)

#### 다. BL 추가 제출

적하목록 제출 이후 하선전까지 BL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①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다만, 세관근무시간이외에 하선작업을 하는 경우 하선 후 첫 근무일 근무시 간 종료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② 선박의 고장 또는 컨테이너 고장 등으로 화물 등의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 ③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 확인 후 계약됨에 따라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 입항적하목록 심사

#### 가. 개요

제출된 적하목록 자료를 기초로 적재화물에 대한 우범성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로 화물정보분석과에서 주관하며,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검사 한다.

#### 나. 검사방법

컨테이너검색기검사(X-ray검사) 또는 정밀검사(개장검사)

☞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화물은 적하목록 정정 등 조치를 하거나 밀수입이 의심될 경우 고발의뢰

#### ■ 입항적하목록 취하

#### 가. 개요

적하목록의 취하는 적하목록관리번호(MRN)의 삭제를 의미하며, 처음부터 적하목록 이 제출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엄격히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

#### 나. 취하사유

- ① 선박.항공기의 미입항(기상악화, 선박사고 등)
- ② 선박 항공기의 유항스케줄 변경
- ③ 적하목록관리번호(MRN)의 오전송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 ④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제출서류

- 적하목록취하신청서(별지제8호의2서식)
-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항적하목록 정정

#### 가. 개요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그 신고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

#### 나. 정정신청자

- (위칙)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위칙
- (예외)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

#### 다. 정정신청자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

☞ 보세운송신고 건은 보세운송 취하 후 정정하거나 보세운송 반입 후 정정 가능

#### 라. 정정신청자

☞ 신청기한 경과 후 정정건은 과태료 부과

구분	정정기간	필요서류
- 하선결과이상보고 물품 - 반입이상보고 물품	이상보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이상보고서
- 냉동회물을 하선과 동시에 - 컨테이너 적입작업 하는 물품	작업 완료 익일까지	– 검수 또는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
– 기타물품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실입증서류

<sup>※</sup> BL양수도, BL분할·합병 경우에는 정정기한 제한이 없음

#### 마. 제출서류

정정사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정정신청 서류제출 대상》

- ① 적하목록 누락에 따른 BL추가
- ② 수하인(화주)정정
- ③ 화물운송주선업자 정정
- ④ 화물 구분 및 화물 속성 정정
- ⑤ 품명 정정
- ⑥ 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수량(중량) 단순 정정 등 저위험 정정 건은 서류제출 없이 전산심사 처리

#### 바. 정정신청 생략 대상

- ① 산물(광물, 원유, 곡물등)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
- ② 용적물품(원목등)으로서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
- ③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비료,설탕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펄프,고지류 등)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
- ④ 포장단위 물품으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며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을 때
- ⑤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

#### 사. 적하목록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 ① 하선 후 BL추가
- ② 명백한 품명오류 정정(품명오류 전산심사건 포함)
- ③ 정정신청 기한 경과
- ④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

#### 제3절 하선

#### ▶ 하선신고

#### 가. 개요

본선에서 물품을 양륙하여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작업를 말하는 것으로 최초 보세구역 물류관리의 출발점이다

#### 나. 신고주체

양륙할 화물이 있는 모든 선사 또는 위임을 받은 하역회사

※ 적하목록은 운항선사가 일괄 제출하지만 하선신고는 양륙할 화물이 있는 선사가 각자 신고

#### ▶ 하선장소

- ① 컨테이너화물: 부두내 또는 부두밖 CY(CFS포함)
- ② 냉동컨테이너화물
  - : 부두내 또는 부두밖 CY 원칙, 화주가 냉동창고 입고를 원하는 경우 냉동창고
- ③ 산물(벌크): 부두내 보세구역
- ④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 ※ (하역장소) 화물을 본선에서 내리거나 적재하는 보세구역으로 하선신고 시 하선장소 와 함께 기재 예시) 하역장소 1부두 하선장소 2부두
- ※ (하역운송) 하역장소에서 하선장소까지 화물운송 시 보세운송 신고절차는 생략되나 보세운송등록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 하선장소 신고

- O 신고단위 : Master BL
- O 신고방법: 하선물품 구분코드(2자리) + 하선장소 보세구역부호
  - (예외1) 하선장소가 재래부두로서 입항전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경우 : 하선물품 구분코드(2자리) + 수입신고번호 또는 보세운송신고번호 기입
  - (예외2) 육상에 양륙하지 않고 외항에서 석유류를 선박에서 선박으로 직접 환적 하기 위하여 하선신고하는 경우: "세관부호 + 48000" 기입

- ① 하선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 보세구역부호(8자리)
- ② 보세구역외장치허가 물품: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번호(10자리)
-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경우: 수입신고번호(15자리)
  - ☞ 다만, 부두직통관 보세구역(터미널) 반입물품은 보세구역부호로 신고
- ④ 입항전 보세운송수리가 된 경우: 보세운송신고번호(20자리)
  - ☞ 다만, 부두직통관 보세구역(터미널) 반입물품은 보세구역부호로 신고
- ※ 하선장소에 수입신고번호 또는 보세운송신고번호가 기재된 건은 전산에서 자동 반출입신고 처리

#### ※ 하선물품 구분코드

코드	하선 유형		
FD	입항전 물품반출신고 수리물품 중 하선 즉시 차상반출하는 물품		
ID	입항전수입신고 수리물품중 하선 즉시 차상반출하는 물품		
П	하선전 보세운송신고 수리물품중 하선 즉시 차상반출하는 물품		
SD	입항전수입신고 수리물품중 하선장소 장치후 반출하는 물품		
ST	하선전 운송신고 수리물품중 하선장소 장치후 반출하는 물품		
GD	하선장소 장치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통관되는 물품		
GT	하선장소 장치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보세운송되는 물품		

#### ▶ 하선반입 기간

- O 컨테이너화물: 3일, 산물(벌크화물): 10일
- O 반입기간 연장신청 :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 ※ 반입기간 기산시점은 적하목록에 기재된 입항일을 기준(선박이 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하고 항내이동을 한 경우 접안일)으로 산정
  - ☞ 반입기간 경과 시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하선신고 심사** (전산 자동수리)

☞ 하선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미수리 상태일 경우는 Master BL 일부가 신고되지 않은 오류 가능성이 높음

#### ▶ 하선결과 이상보고

#### 가. 개요

- O (제출대상) 하선결과 제출된 적하목록과 물품이 상이한 때
- O (제출기한) 하선작업완료일까지 제출 원칙. 예외 세관근무시간이외 하선작업으로 당일 보고가 곤란할 경우 익일 근무시간 오전중 보고
- 나. 보고주체: 하선신고를 한 자
- ☞ 운항선사와 용선사를 의미하나 선사와 계약에 의거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을 한 경우는 검수(검정)업자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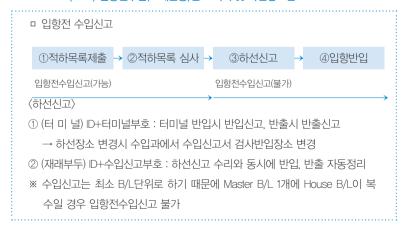
#### 다 하선결과이상보고에 따른 조치사항

코드	보고내용	조치사항
MGN	적하목록있으나 화물 없음	(선사) 적하목록 정정필요(삭제)
MFN	화물있으나 적하목록 없음	(선사) 적하목록 정정필요(추가)
CND	컨테이너번호 다름	(이상보고접수시) 자동정정
SLN	봉인번호 다름	(이상보고접수시) 자동정정
OVW	중량초과	(세관담당자) 직권정정 또는 정정신청
SHW	중량부족	(세관담당자) 직권정정 또는 정정신청

#### 라. 과태료 부과

O 하선결과이상보고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

#### (TIP 1) 입항전수입(보세운송)신고 시기 및 하선장소신고



# □ 입항전 보세운송 ①적하목록제출 → ②적하목록 심사 → ③하선신고 → ④입항반입 입항전보세운송신고(가능) 입항전보세운송신고(가능) 입항전보세운송신고(불가) ◇하선신고〉 ① (터 미 널) ID+터미널부호: 터미널 반입시 반입신고, 반출시 반출신고 ② (재래부두) ID+수입신고부호: 하선신고 수리와 동시에 반입, 반출 자동정리

※ 입항전보세운송은 ④ 입항반입 이전도 가능. 단. 하선장소=보세운송출발지=

#### (TIP 2) 선박 수출입 적하목록 제출

선박계선장소(입항보고서상)일치할 때 가능(터미널만)

- ㅁ 선박을 수입할 때
- ① 수입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



② 입핫후 수입이 결정되는 경우



- ㅁ 선박을 수출할 때
  - ㅇ 선박자체를 수출할 경우 출항 적하목록 제출
  - 출항 적하목록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때
    - 보세공장에서 건조하여 수출하려는 때

## 제**4**장 출항 적하화물

- 1. 출항적하목록 개요
  - 2. 작성요령
- \_\_\_\_ 3. 출항적하목록 제출
- 4. 출항적하목록 취하
- 5. 출항적하목록 정정

#### 출항적하목록 개요



#### 가. 작성대상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반송화물 포함)
-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해 일시양륙한 화물중 목적국으로의 운송을 위해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

#### 나. 적재신고

수출물품은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적재신고를 하여야 하고 선박 출항전에 적재한 물 품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재신고는 출항적하목록제출로 갈음한다.

#### 작성요령(대부분 항목 입항적하목록과 동일)

- ① 화물구분: 수출화물(E), 환적화물(R)
- ② 화물고유식별부호(Unique Consignment Reference)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에 따라 수출업체가 개별 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고 유식별번호(35자리 이내)
- ③ 송하인(Shipper):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수출신고서 수출자와 동일
- ④ 수출신고번호(Export Clearance No) 수출물품은 수출신고번호 기재, 환적화물은 입항 시 화물관리번호 기재
- ⑤ 적재장소(Place of Loading)
  - 화물을 적재하는 컨테이너터미널(부두포함)의 보세구역 코드 기재
  -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경우 '세관부호+99999'
- ⑥ 선하증권번호(Master BL No): 선사 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 Master BL번호 총 16자리 중 앞에서부터 4자리는 관세청에 등록된 선사부호를 부여하고, 11자리는 선사 자율 기재, 마지막 1자리는 Check Digit기재. 다만, 5 년간 중복번호 사용 불가
- ⑦ 선하증권번호(House BL No) : 포워더 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 House BL번호 총 16자리 중 앞에서부터 4자리는 관세청에 등록된 포워더 부호 를 부여하고, 11자리는 포워더 자율 기재, 마지막 1자리는 Check Digit기재, 다

만, 5년간 중복번호 사용 불가

- 개별화물에 대하여 House BL이 두 번 이상 발행되었을 경우(Co-load)에는 최 초 수출자에게 발행된 BL번호 기재

#### ▶ 출항적하목록 개요

#### 가. 제출시기

원거리	근거리	벌크 화물, 공컨테이너	환적화물
적재 24시간전	적재 전	출항전	출항익일 24시까지

- ※ (근거리 지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필리핀,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입항보다 범위가 넓음
- 환적화물 적하목록제출 시기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유예 중

#### 나. 위반시 제재

O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제3항 위반으로 2천만 이하(과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 적하목록 전송 체계

ĺ	1차마감	1차마감 적재전마감(2차)	
	원거리	근거리, 벌크, 공컨테이너	환적화물

- 출항 익일까지 최종마감 되지 않은 건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익일 24시에 강제 마감 종료

#### ▶ 출항적하목록 취하

#### 가. 개요

적하목록의 취하는 적하목록관리번호(MRN)의 삭제를 의미하며 처음부터 적하목록 이 제출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엄격히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

#### 나. 취하사유

- ① 선박. 항공기의 미출항(기상악화. 선박사고 등)
- ② 선박,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 ③ 적하목록관리번호(MRN)의 오전송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 ④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제출서류

- 적하목록취하신청서(별지제8호의2서식)
-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항적하목록 정정

#### 가 개요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그 신고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하목 록 정정신청서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 나. 신청시기

출항적하목록 승인 이후 가능하며 1차마감, 적재전마감 상태일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음 ☞ 통상 출항일부터 2일이 지난 후 정정 가능

#### 다. 서류제출 대상

- ① 적하목록 누락에 따른 BL추가
- ② 송하인(수출자), 수하인정정
- ③ 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정정신청 기한 : 출항일로부터 90일이내

#### 마. 과태료 부과대상

- ① 출항 후 BL추가
- ② 품명정정(품명오류 전산심사건 포함)
- ③ 정정기한경과

#### (TIP) Empty 컨테이너 수출입 신고 요령

#### ① 수 입

- 운송을 위하여 수입되는 컨테이너(일반적으로 선사에서 사용하는 EMPTY 컨테이너)는 적하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입항반입 후 별도의 보 세운송신고나 수입신고 절차 없음
- 신고요령: BL타입'E'(BL타입'S'또는'C'아님), 수량 0, 중량 0 으로 신고
- ※ 선사의 운송용기가 이닌 회주의 필요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신고 대상 임 ② 수 출
  - 수입과 같이 선사에서 사용하는 EMPTY컨테이너는 출항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수출신고 절차 없음
  - 신고요령: BL타입 'E'(BL타입 'S' 또는 'C'아님), 수량 0, 중량 0 으로 신고
  - ※ 국내 생산되어 수출되는 컨테이너는 수출신고 대상으로 수출신고와 동시에 자동선적 처리(컨테이너 HS부호 8609.00.)
  - 위 경우 BL 타입이 'E'가 아닌 때에는 세관담당자(수출과)에게 자동선적 취소 를 요청하여 취소 후 컨테이너번호 기재하여 적하목록 제출

## 제**5**장 환적화물

- 1. 적하목록 제출
- 2. 하선장소
- 3. 반출입신고
- 4. 환적신고
- 5. 보세운송
- 6. 환적증명서 발급

#### 출항적하목록 개요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적하목록 제출 대상이며 총기류 등 위해물품, 마약류, 수출입 금지품, 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한다.

#### ▶ 하선장소

- 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장소 로 지정한 보세구역
- ②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하선장소 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

#### ▶ 반출입신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 반출입시 반출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 반출입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

#### ▶ 화적신고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환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하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적출입작업 전까지
- ②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적재 전까지

#### ▶ 보세운송

#### 가. 운송원칙

환적화물이 보세구역간 이동할 때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적화물 유치 및 신고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운송특례사항을 두고 있다.

#### 나. 환적화물 특례보세구역 운영

특례보세구역간 환적화물이 이동은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 갈음

(특례보세구역 지정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 중 환적 물동량,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환적화물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부두 내 보세구역
- 2.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ODCY)
- 3. 하선장소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 공인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 비가공증명서 발급

#### 가. 신청인

환적화물을 원상태로 반출하였음을 증명받으려는 자

※ 환적화물 뿐만 아니라 반송화물(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물품 포함)도 발급 가능

#### 나. 제출서류

- 비가공 증명 신청서
  - · 환적물품 : 「환적회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 반송물품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1호 서식
- 환적신고서(컨테이너가 교체되었을 경우)
- 일시장치확인서(환적화물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 확인)
- 수입인지(400원상당)
- BL 사본

#### (TIP) 자유무역지역내 이고운송 신고 요령

#### 가. 개요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구역간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하고 반출입 신고로 갈음

#### 나. 부호등록 절차

관할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위한 '업체부호등록'을 요청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은 후 이고운송시스템 이용

#### 다. 반출입신고

기존 보세운송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출예정신고

- 보세운송신고번호 업체부호란 '8'로 시작하는 업체부호 사용
- 보세운송기간: 3일
- 보세운송구분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신고 'F'
- 운송구간 : 발송지, 도착지 모두 동일 자유무역지역
- ※ 발송지에서는 보세운송 형식으로 반출예정정보가 전송되고 도착지에서는 보세운송 반입처리 됨

## 제**6**장 벌칙

- 1. 보세화물 관련 질서벌
- 2.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 3. 적하목록 및 수출물품 미선적 과태료
- 4.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재제

### ▶ 보세화물 관련 질서벌

위반행위	해당조항	벌금	
법 제135조제2항 및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을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제출한 경우	법 제276조 제3항 제1호		
법 제1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항적하목록을 출항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2천만원 (과실일 경우 300만원)	
법 제222조를 위반하여 세관 등록 없이 화물운송주선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법 제1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적하목록을 입항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 제276조 제4항 제4호		
법 제1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항절차를 마치기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법 제276조 제4항 제3호		
법 제1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하역하 거나 환적한 경우	법 제276조 제4항 제3호	1천만원 (과실일 경우 200만원)	
법 제1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수출신고수리전 물품 포함)을 외국무역선에 무단 적재한 경우	법 제276조 제4항 제3호		
법 제141조를 위반하여 세관 신고 없이 일시양륙 화물을 하역 하거나 환적한 경우	법 제276조 제4항 제3호		

### ▶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위반사항	과태료		
취인사용	1차적발	2차적발	3차적발 이상
법 제1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관에서 제한한 물품 하역장소 및 통로외의 장소로 물품이 이동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1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역한 물품을 기간 내 입항반입 시키지 못한 경우			
- 3일이내 미반입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3일초과 미반입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2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사, 항공사 등이 선 하 증권내역, 이상화물보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2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사, 항공사 등이 주소, 상호 등 주요사항의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 적하목록 및 수출물품 미선적 과태료(구간제 부과)

위반사항		과태료				
	1구	간	27	간	37	간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을 30일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못했을 경우	10€ (1~1		30€ (11~2		50년 (21회	
	10E MRN 1~15	I기준	20E MRN 151~3	I기준	305 MRN 3002	I기준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	오류 BL	부과 배수	오류 BL	부과 배수	오류 BL	부과 배수
<ul><li>BL추가</li><li>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li><li>정정기한 경과</li></ul>	1~10	1배	1~10	1배	1~10	1배
- 광정기인 영파 -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	11~50	2배	11~50	2배	11~50	2배
	50 초과	3배	50 초과	3배	50 초과	3배

### ▶ 보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

위반내용	제재내용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임원이 관세법 또는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의 처벌을 받은 경우	1차 : 업무정지 20일 2차 : 업무정지 40일 3차 : 업무정지 60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세관장 명령사 항을 위반하여 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의 처벌을 받은 경우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20일 3차 : 업무정지 30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해당기간
법 제222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장부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시행령 제231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1차 : 경고처분 │ 2차 : 업무정지 5일 │ 3차 : 업무정지 10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등록및관리에관한고시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sup>※</sup> 제재내용의 1차, 2차, 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 적하목록 Q&A

- 1. 적하목록 일반
- Ⅱ. 적하목록 정정
- Ⅲ. 하선신고
- Ⅳ. 관리대상화물
- V. 입항전보세운송신고
- VI. BL분할 합병 및 비가공증명서
- Ⅶ. 전산신고 및 오류통보

### 1. 적하목록 일반

문의사항	페이지
1. 적하목록이 무엇인가요?	48
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요?	48
3.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누구인가요?	48
4. 적하목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48
5. 화물관리번호란 무엇인가요?	48
6. BL타입(S, C, E)은 무엇인가요?	49
7. 화물구분 (I, E, T, R)은 무엇인가요?	49
8. 환적화물은 출항적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49
9.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적하목록 제출이나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49
10. 적하목록 작성 시 특수화물코드는 위험물만 기재하나요?	49
11.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는 무엇인가요?	49
12. 입항보고 제출이 먼저인가요?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먼저인가요?	49
13. 수입화물진행정보에 중량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50
14. 해상 적히목록제출 시 특송화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50
15. House BL번호는 최대 몇 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나요?	50
16. BL 1건이 여러 항차로 분할 반입될 경우 동일 BL번호를 중복 사용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나요?	50
17. 까르네 수출신고 건도 적하목록 제출대상인가요?	50

### II. 적하<del>목</del>록 정정

문의사항	페이지
1. 적하목록 정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50
2.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50
3.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50
4. 적하목록정정 신청을 했는데 접수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50
5.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51
6. 정정신청 후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51
7. 적하목록정정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51
8. 적하목록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51

문의사항	페이지
9. 과태료 부과대상 중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는 어떤 경우인가요?	52
10.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정정신청 기한 경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52
11. 적하목록상 화물구분(수입, 환적)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52
12. 적하목록 제출 이후 공휴일에 하선전 긴급 양하 건이 있어 BL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
13. 적하목록 수하인의 사업자번호 정정은 가능한가요?	53
14. 입항적하목록의 중량 정정 시 Master BL과 House BL중 어느 BL을 먼저 정정해야 하나요?	53
15. 적하목록 중량이 잘못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입이상보고를 하였습니다. 적하목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53
16. 부산세관에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인천세관 관할 보세구역을 장치예정장소 에 기재하였습니다. 정정해야 하나요?	53
17.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 보여지는 출항일자와 실제 출항일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정이 가능한가요?	53
18. 출항적하목록이 최종마감 되었는데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53
19. 출항적하목록 1차 마감 후 선박이 변경되어 취하해야 합니다.	53
20. 출항적하목록 BL타입 변경을 위해 Master BL을 삭제할 경우 House BL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54
21. 출항적하목록의 수출신고번호가 바뀌어서(Cross)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54
22. 출항적하목록의 UCR번호가 무엇인가요?	54
23. 출항적하목록 취하 후 동일 MRN사용이 가능한가요?	54
24. 출항적하목록 최종 마감 이후 자동승인은 언제 되나요?	54
25. 분할선적 차수는 몇 차까지 가능한가요?	54
26. 출항적하목록 마감을 취소하면 어떤 상태로 변경되나요?	54
27. 수출신고 2건, BL 2건으로 동시포장 신고가 가능한가요?	54
28. '17년도 MRN으로 출항적하목록 제출하고 18년도 MRN으로 출항보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54
29. 환적화물은 입항 후 며칠 이내에 출항해야 하나요?	54
30. 환적화물의 경우 입항적하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한가요?	54
31. 입항 시 BL타입을 'S'로 제출한 환적화물을 출항 시 BL타입을 'C'로 제출할 수 있나요?	55
32. 수출신고번호가 없는 화물은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하나요?	55
33. 어느 포워더가 수출신고번호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55

### Ⅲ. 하선신고

문의사항	페이지
1.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55
2. 하선신고는 누가 하나요?	55
3. 하선신고 후 하선장소를 정정 하고 싶습니다.	55
4. 포워더도 하선장소를 정정할 수 있나요?	55
5. 적하목록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55
6.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로 반입하면되나요?	56
7.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로 반입하면 되나요?	56
8.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56
9.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하선신고 정정승인(삭제)으로 보여집니다.	56
10. 어느 시점부터부터 하선장소·하역장소은 정정할 수 있나요?	56
11. 하선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56
12. 하선신고수리 후 적하목록 BL번호를 정정하였습니다. 입항반입 신고 때도 BL번호를 정정해야 하나요?	56
13. 수입선박을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아 통관하는 경우 하선신고(하선코드: GD)를 어떻게 하나요?	57
14. 하선신고 수리 후 Master BL을 추가한 경우 하선신고도 추가해야 하나요?	57

### Ⅳ. 관리대상화물

문의사항	페이지
1. 수입화물진행정보에 관리대상화물 검사선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57
2. 수입화물진행정보에 관리대상화물 지정여부(Y)는 언제 해제되나요?	57
3.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투시해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57
4. 환적화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57
5.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57
6. 관리대상화물은 컨테이너 단위로 지정하나요?	57
7.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등록은 완료되었으나 보세운송신고가 안됩니다.	57
8.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검색기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이 발생하나요?	57

### V. 입항전보세운송신고

문의사항	페이지
1. 하선신고 수리된 상태로 입항전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58
2. 1Master, 복수 House건으로 일부 House건만 입항전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58
3. 입항전보세운송건의 하선신고를 「IT+03046000」로 할 수 있나요?	58
4. 입항전보세운송신고 시 출발지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58

### VI. BL분할 합병 및 비가공증명서

문의사항	페이지
1. BL분할(화물관리번호분할)이란 무엇인가요?	58
2. 수입물품을 양도하게 되어 BL분할을 신청할 때 수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58
3. 현재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세창고에 미반입 상태이나 긴급하여 BL분할로 통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8
4. BL분할을 했는데 중량, 수량이 잘못 되어있습니다.	59
5. Master BL건을 BL분할 하였는데 최초 화물관리번호 물품이 보세운송신고가 안됩니다.	59
6. 1개 Master BL에 1개 House BL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House BL 일부가 화주가 바뀌어 BL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BL분할이 가능한지? BL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9
7. 수입신고한 물품 중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BL분할로 통관 하려고 합니다. 통관보류 된 물품(반송예정)의 납부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도 BL분할이 가능한가요?	59
8. 비가공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신청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59
9. 환적화물 비기공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60
10. BWT화물도 비가공증명서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60

### ₩. 전산신고 및 오류통보

문의사항	
1. 수출신고한 공컨테이너의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니 선적 건이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60
2. 하선결과이상보고 전송시「상이내역부호가 CND(컨테이너번호가 다름)이면 이미 반입된 컨테이너번호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0
3. 환적화물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니 환적화물이 아니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61
4. 하선신고 시 「하역회사부호를 바르게 입력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1

문의사항	페이지
5. 하선신고 시「입항전 수입신고 반입예정지와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1
6. 하선신고 시「하선물품구분이 ID,IT가 아닌 경우 보세구역외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1
7. 하선신고 시「보세운송 출발지와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 였습니다.	61
8. 하선기간 연장 신청 시 「담당세관/과 아니므로 수신된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1
9. 관리대상지정여부:Y[검사완료-적하목록기재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61
10. 수입화물진행정보 인쇄시 「에러코드:1020030013보고서를 로딩하면서 예외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1
11. 입항적하목록 부분 재전송 후 「해당건은 이미 보완 마감 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2
12. 적하목록 전송 시「사용정지된 화물주선업자부호입니다. 세관에 부호를 확인 하십 시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2
13. 적하목록 전송 시 「M BL 반입예정장소를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2
14. 입항적하목록 접수 전송 후 「본세관, 과는 적하목록문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세관, 과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2
15.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건이 세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2
16.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정정전 내역(품명)이 적하목록과 상이합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2
17.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입항보고 제출건이므로 입항보고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2
18.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 「수입전 물품반출신고수리된 건으로 적하목록 정정 삭제를 할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2
19.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 「해당 MRN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적하목록 정정 삭 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2
20.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이미 접수된 제출번호입니다. 새로운 제출번호를 사용 하십 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3
21.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 시 「House BL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정, 삭제할 수출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63
22, 인천세관(040)에 제출하여야 할 적하목록을 부산세관(030)으로 잘못 제출하였습니다.	63
23. 적하목록을 제출했는데 이번 항차로 입항/출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하목록을 취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3
24.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했는데 처리상태가 ' 기각 ' 입니다.	63
25. 적하목록 정정신청 후 기각되어 다시 정정신청을 하는데 「기 심사된 자료입니다」 라고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63
26. 적하목록 정정내역을 실수로 잘못 전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3

문의사항	페이지
27. House BL 추가 신청을 전송했더니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선사 BL타입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
28. 한 BL에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중 일부만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장소가 지정장치장으로 되었는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지 않은 컨테이너도 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해야 하나요?	64
29. 1개의 Master BL에 1개의 House BL로 신고를 했는데 화주가 BL을 나눠서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64
30.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전송했는데 체화된 물품이라고 전산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64
31. 부두직통관으로 수입신고수리후 물품을 반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창고에서 개장을 해보니 수입신고 내역과 물건의 중량·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하목록정정이 가능한가요?	64
32. 입항반입 후 House BL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Master BL타입이 SIMPLE입니다. BL타 입을 CONSOL로 변경 시 반입관련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65
33.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오류메시지를 통보받았습니다.	65
34.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이미 선적된 수출신고내역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확인되 었습니다.	65
35. 적하목록제출을 했는데 수출이행내역에는 'N'으로 되어 있습니다.	65
36. 수출신고내역과 중량·수량 불일치로 수출이행내역에는 'N'으로 표기되어 있어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여전히 수출이행내역이 '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65
37. BL상 중량·수량이 정정되어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선적 포장개수 합은 통관 포장개수 합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 습니다.	65
38. House BL추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House BL의 포장개수 합은 Master BL의 총 포장개수 합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65
39.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수리일자가 출항일자 이후 건입니다」 오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6
40. 출항적하목록 BL번호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66
41. 수출신고가 2건으로 수리됐는데 그 중 일부를 동시포장 하였습니다. 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66
42. 분할선적 시 수출신고 사항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66

#### 1. 적하목록 일반

#### Q1. 적하목록이 무엇인가요?

A. 적하목록 기재요령에 따라 선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의 화물 적재 목록을 말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 재화물적하목록」이라고 합니다.

#### Q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적하목록제출의무자는 작성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할 자로 외국무역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해운대리점을 포함)를 말합니다.

#### Q3.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누구인가요?

- A. 적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제 작성한 자(가~다)로, 통상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의 국내 법인(본사,지사), 대리인(흔히 파트너)를 말합니다.
  - 가. 수출입물품을 집하 · 운송하는 운항선사
  - 나,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을 용선한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
  - 다.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대리점 포함)
- (예시) A상선 미국지사 발행 선하증권의 내역  $\rightarrow$  A상선 국내지사가 적하목록 작성, 미국의 B포워 더 발행 선하증권 내역  $\rightarrow$  국내 파트너 C포워더가 적하목록 작성

#### Q4. 적하목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A. 입항적하목록과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시기가 구분됩니다.
  - 입항적하목록: 입항24시간전(원거리), 입항전(근거리)
  - 출항적하목록: 적재24시간전(원거리). 적재30분전(근거리). 출항익일(환적화물)

#### Q5. 화물관리번호란 무엇인가요?

A. 화물관리번호는 적하목록 관리번호(MRN)에 Master BL일련번호(MSN), House BL일련번호(HSN)을 합한 것입니다.

◇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 관리번호 + Master BL일련번호 + House BL일련번호	$\Diamond$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	관리번호 +	- Master Bl	일련번호 +	· House BI 일련번호
---	------------	--------	--------	--------	-------------	--------	-----------------

MRN	MSN	HSN	계
18ABCDA123I	0089	0001	15 or 19자리

#### ※ 적하목록 관리번호

1	8	А	В	С	D	Α	1	2	3	I
	:연도 자2)	선사부호(영문 4) 항공사부호(영문 2)				(	일련 영문 및	번호 숫자 4	)	입항(I) 출항(E)

#### Q6. BL타입(S. C. E)은 무엇인가요?

A. 우선 'S'와 'C'는 House BL의 유무로 구분합니다.

'S'는 SIMPLE의 약자이며 Master BL만 있고 House BL이 없는 경우

'C'는 CONSOL의 약자이며 Master BL과 House BL이 있는 경우

'E'는 EMPTY의 약자이며 공컨테이너를 수출입하는 경우

#### Q7. 화물구분(I, E, T, R)은 무엇인가요?

A. 적하목록상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의 구분입니다.

'I'는 IMPORT의 약자로 수입화물

'E'는 EXPORT의 약자로 수출화물

'T'는 TRANSSHIPMENT의 약자로 입항하는 환적화물

'R'는 RESHIPMENT의 약자로 출항하는 환적화물

#### Q8. 환적화물은 출항적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A. 환적화물은 수출신고번호가 없으므로 수출신고 관련번호에 입항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적화물은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입항 화물관리번호로 조회하면 출항적하목록 제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하목록 제출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9.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적하목록 제출이나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적하목록제출 중계사업자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적하목록 제출이 나 정정이 가능합니다.

#### Q10. 적하목록 작성 시 특수화물코드는 위험물만 기재하나요?

A. 위험물뿐만 아니라 검역대상물품과 보온(보냉)물품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Q11.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면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이 부산항내에서 다른 부두로 이동한다는 신고입니다. 적하목록 정정이나 화물이동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 Q12. 입항보고가 먼저인가요?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먼저인가요?

A. 입항보고 시 입항적하목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항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항보고와 적하목록 제출시기는 준수해야합니다.

#### Q13. 수입화물진행정보에 중량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A KG단위로 표시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Q14. 해상 적하목록 제출 시 특송화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A. 항공화물은 가능(BL타입 X 또는 D)하나 해상화물은 불가능합니다.

#### Q15, House BL번호는 최대 몇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나요?

A. 20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

### Q16. BL 1건이 여러 항차로 분할 반입될 경우 동일 B/L번호를 중복 사용하여 적하목록 을 제출할 수 있나요?

A. 입항적하목록은 BL번호가 아닌 화물관리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Q17. 까르네 수출신고 건도 적하목록 제출대상인가요?

A.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적하목록 정정

#### Q1.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입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최종마감 이후 가능합니다. 입항적하목록의 경우 심사완료 이후인 경우에도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완료 전,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도착지 반입 전까지는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Q2.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가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수입화주(선사, 포워더, 관세사 등 위임을 받은 자 포함)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Q3.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적하목록제출 전송 프로그램(유로지스허브, 프리즘3.0 등)으로 적하목록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중계사업자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사용하시는 중계사업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무의하시면 됩니다

#### Q4. 적하목록정정 신청을 했는데 접수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용하시는 적하목록제출 전송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관 정정심사가 완료되면 '승인'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항 건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입항적하목록 정정 승인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으면 정상 접수가 된 것이니 세관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류통보나 아무런 메시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확인 후 재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Q5.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세관은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전산승인 / 기각 / 서류제출대상'으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일부 경미한 건이나 하선결과이상보고에 따른 정정 등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수하인 정정, 품명 정정 등 정밀심사가 필요한 건은 서류제출로 변경하여 서류검토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심사결과 기각 또는 서류심사 대상으로 변경 시 기각사유와 제출 서류(예 : 정정신청서, 사유서, BL, INVOICE, Shipper전문)를 기재하여 통보하오니 확인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Q6. 정정신청 후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세관에서 통보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 후, 적하목록 정정신청서에 정정사항을 기재하고 적하목록 정정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정정신청서, 사유서, BL, INVOICE, PACKING LIST 이며, 정정 사안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를 기재하여 통보하오니 반드시 전산으로 세관통보내역을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7. 적하목록정정신청서 양식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A. ①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http://unipass.customs.go.kr) → 고객지원 → 자료 실 → 일반자료실 → 13번 게시물
  - ②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검색 → 행정규칙 항목에 표시된 고시 클릭 후 좌측상단 「별표/서식」 클릭(적하목록 관련 양식 수록) → 별지 제9호 서식 다유로드

#### Q8. 적하목록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A. 적하목록정정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IHLILĀ			벌	칙			
위반사항	1구	-간	27	간	3구간		
적하목록 관련	10E MRN 1~15	  기준	20E MRN 151~3	  기준	305 MRN 3002	기준	
- BL추가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오류 BL	부과 배수	오류 BL	부과 배수	오류 BL	부과 배수	
- 정적한 점경 기세 포뉴 - 정정기한 경과	1~10	1배	1~10	1배	1~10	1배	
–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	11~50	2배	11~50	2배	11~50	2배	
	50 초과	3배	50 초과	3배	50 초과	3배	

- ① 1단계: 1년간 행위자별 위반한 적하목록 단위(MRN)를 기준으로 구간 결정
- ② 2단계: 해당 적발된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 건수를 기준으로 배수 산정
- ③ 3단계: 과태료 금액 = 구간금액 × 배수

(사례) 1년간 적하목록(MRN) 위반이 30번째로 해당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건수가 5건 ↔ 과 태료 산정 : 10만원(1구간) X 1(1배수) = 10만원

#### Q9. 과태료 부과대상 중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적하목록 신고품명과 현품이 명백히 서로 다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참 고로 신고품명에 대한 사후 전산심사를 통하여 명백한 품명오류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Q10.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정정신청 기한 경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입항적하목록은 입항일로부터 60일 경과, 출항적하목록은 출항 후 90일이 경과 한 후 적하목록을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밖에 수입화물은 하선결과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적하목 록을 정정한 때, 냉동화물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날까지 적하목록 정정을 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B/L양수도와 B/L분할합병은 정정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Q11. 적하목록상 화물구분(수입, 환적)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A. 수하인, 통지처, 양륙항 등에 따라 정정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적화물이 수입화물로 정정될 경우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며 현품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 · 통지처 · 양륙항	수입(I) →환적(T)	환적(T) → 수입(I)		
국 내	정정 불가(반송으로 진행)	정정 가능		
외 국	정정 가능	정정 가능(국내로 정정 시)		

### Q12. 적하목록 제출 이후 공휴일에 하선전 긴급 양하 건이 있어 BL을 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휴일이라도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서를 세관에 전산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을 전송했다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Q13. 적하목록 수하인의 사업자번호 정정은 가능한가요?

A 사업자번호는 정정대상이 아니며 정정할 수 없습니다.

### Q14. 입항적하목록의 중량 정정 시 Master BL과 House BL 중 어느 BL을 먼저 정정해야 하나요?

A, House BL 중량을 정정하면 Master BL 중량은 자동 정정됩니다.

### Q15. 적하목록 중량이 잘못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입이상보고를 하였습니다. 적하목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A. 적하목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세운송이나 수입신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16. 부산세관에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를인천세관 관할 보세구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정정해야 하나요?

A.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선신고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 Q17. 화주가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 보여지는 출항일자와 실제 출항일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정이 가능한가요?

A. 우선 선박 입출항을 관리하는 감시과에 실제 출항일로 출항보고를 정정을 하고, 통관지원과에 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Q18. 출항적하목록이 최종마감 되었는데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A. 적하목록 중 제출기한내 미제출한 건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19. 출항적하목록 1차 마감 후 선박이 변경되어 취하해야 합니다.

A. 1차 마감 후 취하는 불가합니다. 최종 마감상태 승인 이후 취하하시면 됩니다.

## Q20. 출항적하목록 BL타입 변경을 위해 Master BL을 삭제할 경우 House BL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A. Master BL내역을 삭제하면 House BL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Q21. 출항적하목록의 수출신고번호가 바뀌어서(Cross)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A 잘못 제출된 BL상의 수출신고번호를 각각 삭제하고 맞는 번호로 추가하면 됩니다.

#### Q22. 출항적하목록의 UCR번호가 무엇인가요?

A. 수출업체가 개별화물에 대해 부여하는 개별식별부호입니다.

#### Q23. 출항적하목록 취하 후 동일 MRN사용이 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 Q24. 출항적하목록 최종 마감 이후 자동승인은 언제 되나요?

A. 출항일 다음날 24시에 전산에서 자동승인 처리됩니다.

#### Q25. 분할선적 차수는 몇 차까지 가능한가요?

A. 9차까지 가능하며 9차 이후에는 1차부터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 Q26. 출항적하목록 마감을 취소하면 어떤 상태로 변경되나요?

A. 최종 마감상태에서 예정 상태로 변경되며 추가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 Q27. 수출신고 2건. BL 2건으로 동시포장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동일 BI.내에서만 동시포장신고가 가능합니다

#### Q28. 17년도 MRN으로 출항적하목록 제출하고 18년도 MRN으로 출항보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출항보고와 적하목록의 MRN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기존 MRN취하 후 다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Q29. 환적화물은 입항 후 며칠 이내 출항해야 하나요?

A. 기한은 없으나 30일이내에 출항하지 않으면 미선적 건으로 관리합니다.

### Q30. 환적화물의 경우 입항적하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항 화물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 여도 누락됩니다

## Q31. 입항 시 BL타입을 'S'로 제출한 환적화물을 출항 시 BL타입을 'C'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제출 가능합니다. BL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Q32. 수출신고번호가 없는 화물은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하나요?

A. 수출신고 관련번호에 「NCV」기재하시면 됩니다.

#### Q33. 어느 포워더가 수출신고번호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세관 적하목록 담당자 또는 관세청 고객상담센터(1544-1285)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Ⅲ. 하선신고

#### Q1.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A 컨테이너화물: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CY(CFS포함)
  - 냉동컨테이너화물: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CY가 원칙이나 화주가 냉동창고 입고
     를 원하는 경우 냉동창고
  - 산물(벌크): 부두 내 보세구역
  -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 Q2. 하선신고는 누가 하나요?

A. 물품을 적재하여 양륙할 화물이 있는 모든 선사가 각자 합니다.

#### Q3. 하선신고 후 하선장소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A. 하선신고 후 입항반입전까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입항반입된 경우는 하선장소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세운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4. 포워더도 하선장소를 정정할 수 있나요?

A. 하선은 Master BL단위로 선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포워더는 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사를 통하여 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 Q5. 적하목록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적하목록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선신고서에는 정확하게 하선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Q6.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 물품을 반입하면 되나요?

A.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는 경우 화물정보분석과에서 하선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직권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선장소를 확인 하신 후 지정장소로 화물을 반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Q7.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 물품을 반입하면 되나요?

A. 예,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 물품을 반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검색기 검사는 운송인이 하선장소에서 검색기센터로 이송하여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하선장소로 재반입합니다.

#### Q8.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반입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날이 반입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 아니면 중간 공휴일은 반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예) 컨테이너화물 반입기간 3일

수요일 입항  $\rightarrow$  목, 금, 토, 일, 월요일까지 반입의무기간 목요일 입항  $\rightarrow$  금, 토, 일, 월까지 반입의무기간 금요일 입항  $\rightarrow$  토, 일, 월 까지 반입의무기가

#### Q9.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하선신고 정정승인(삭제)으로 보여집니다.

A 하선신고 삭제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Q10. 어느 시점부터 하선장소 · 하역장소은 정정할 수 있나요?

A, 하선신고수리 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 Q11. 하선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A. 하선신고를 누락한 BL이 존재하거나, 하선장소 기재오류가 있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선신고는 전산심사로 자동수리 처리됩니다.

## Q12. 하선신고수리 후 BL번호를 정정하였습니다. 입항반입 신고 때도 BL번호를 정정해야 하나요?

A.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Q13. 수입선박을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아 통관하는 경우 하선신고(하선코드 : GD) 를 어떻게 하나요?

A. 하선장소에 보세구역외장치허가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Q14. 하선신고 수리 후 Master BL을 추가한 경우 하선신고도 추가해야 하나요?

A 추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하선신고는 Master BL단위로 하기 때문에 포워더에서 House BL을 추가하는 경우는 관련 선사에 하선신고 대상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Ⅳ. 관리대상화물

#### Q1. 수입화물진행정보에 관리대상화물 선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 하선신고 수리전에는 관리대상화물 선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Q2. 수입화물진행정보에 관리대상지정여부(Y)는 언제 해제되나요?

A. 화물정보분석과에서 검사결과를 이상없음으로 등록하면 자동해제 됩니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으면 지정여부 표시는 없어지지 않고 Y(검사완료)형식으로 표시됩니다.

#### Q3.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투시해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A X-RAY검사 후 이상이 없어 관리대상화물 지정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 Q4. 환적화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A 화적화물도 우범성이 의심될 경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 Q5.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관리대상화물 지정사유는 비공개입니다.

#### Q6. 관리대상화물은 컨테이너 단위로 지정하나요?

A. 아닙니다. BL단위로 지정합니다.

#### Q7.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등록은 완료되었으나 보세운송신고가 안됩니다.

A. 보세운송신고 시 승인신청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Q8.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검색기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이 발생하나요?

A. 터미널 CY에서 검색기센터까지 운송비용이 발생하며 화주가 부담합니다.

### V. 입항전보세운송신고

#### Q1. 하선신고 수리된 상태로 입항전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A. 하선신고를 삭제 후 입항전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세운송출 발지. 하선장소. 선박계선장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Q2. 1 Master, 복수 House건으로 일부 House건만 입항전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A. 일부 Hosuse건만 입항전보세운송신고는 안됩니다. 참고로 하선신고는 Master단 위로 하기 때문입니다.

#### Q3. 입항전보세운송건의 하선신고를 'IT+03046000'로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참고로 하선장소가 터미널은 「IT+터미널부호」, 재래부두는 「IT+보세운송신고번 호 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Q4. 입항전보세운송신고 시 출발지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A. 보세운송 출발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보세운송 취하 후 다시 보세운송신고 하여야 합니다

#### VI. BL분할 합병 및 비가공증명서

#### Q1. 'BL분할(화물관리번호분할)'이란 무엇인가요?

A B/L분할이란 B/L자체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B/L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화물관리번호에 별도의 HSN번호로서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만을 추가시키는 것으로서 한 건 B/L의 물품이 나뉘어서 보세운송하거나 일부 반송하고자할 때 이용하는 업무입니다.

## Q2. 수입물품을 양도하게 되어 BL분할을 신청할 때 수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BL분할은 동일한 BL을 단순히 HSN만 추가하여 보세운송 및 통관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분할되더라도 BL번호는 동일하므로 분할 전후의 수하인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만일 BL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가 되었다면 양수도 계약 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3. 현재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세창고에 미반입 상태이나 긴급하여 BL분할로 통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BL분할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BL분할 신청 시 자동으로 장치된 장소에 분할된 내역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 한 이후에 BL분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Q4. BL분할을 했는데 중량. 수량이 잘못 되었습니다.

A. 반출·반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B/L분할 취소 전송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정확한 중량·수량을 입력하여 B/L분할 신청을 하면 되고, B/L분할된 물품이이미 반출까지 된 상태라면 중량·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5. Master BL건을 분할 하였는데 최초 화물관리번호 물품이 보세운송신고가 안됩니다.

A. 수입통관이나 반송신고는 BL분할 후 남아있는 기존의 화물관리번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세운송신고는 House BL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잔여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할 경우 잔여품 전량을 다시 새로운 HSN으로 분할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Q6. 1개 Master BL에 1개 House BL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HOUSE BL 일부가 화주가 바뀌어 BL분할하려고 합니다. BL분할이 가능한지? BL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야 하나요?

A BL분할은 동일 화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BL분할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변경전의 BL은 정정을 하고 화주가 바뀌는 건은 BL 추가(신규 BL생성)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Q7.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BL분할로 통관 하려고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반송예정)의 납부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도 BL분할이 가능한가요?

A. 징수금액 최저한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으나, 수입 신고물품 중「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는 분할된 물 품이 징수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 Q8. 비가공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신청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A. 발급 요건은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된 경우 입니다.

환적화물은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선사 또는 포워더, BWT화물은 화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9.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비가공 증명 신청서(별지 제5호 A서식) 1부
- ①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별지 제5호 B서식) 2부.
- ③ 일시장치 확인서\* 1부
  - \* 보세구역운영인(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발행하며. 국내 반입되어 출항까지 장치된 장소마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출항 BI 사본
- ⑤ 수입인지(400원)
- ⑥ 환적신고서(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을 한 경우에 한함)
- ※ 비가공 증명 신청서 양식은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검색 → 「별표/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Q10. BWT화물도 비가공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예.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신고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① 비가공 증명 신청서(별지 제31호 A서식) 1부.
- ①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별지 제31호 B서식) 2부.
- ③ 일시장치 확인서\* 1부.
  - \* 보세구역운영인(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발행하며. 국내 반입되어 출항까지 장치된 장소마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출항 BL사본
- ⑤ 수입인지(400위)
- ※ 비가공 증명 신청서 양식은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검색 → 「별표/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 ₩ 전산신고 및 오류통보

#### Q1. 수출신고한 공컨테이너의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니 선적 건이라고 오류가 발생합 니다.

A, 공컨테이너는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자동 선적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출과에 요 청하여 수출신고한 공컨네이너의 자동 선적 내역을 삭제한 후 BL타입 ' E ' (공 컨테이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Q2. 하선결과이상보고 전송 시「상이내역부호가 CND(컨테이너번호가 다름)이면 이미 반입된 컨테이너번호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A. 컨테이너 입항반입신고를 삭제한 후 하선결과이상보고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 Q3. 환적화물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니 환적화물이 아니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A. 입항적하목록 제출 시 수입화물(I)로 제출된 건입니다. 반송화물로 진행하거나 입 항적하목록상의 수입화물을 환적화물(T)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 Q4. 하선신고 시 「하역회사부호를 바르게 입력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하역회사부호 자리수(8자리)가 틀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하역회사부호를 입력했음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 Q5. 하선신고 시「입항전 수입신고 반입예정지와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관세사에 연락하여 수입신고서의 반입예정장소를 하선장소로 정정하면 됩니다.
- Q6. 하선신고 시 「하선물품구분이 ID, IT가 아닌 경우 보세구역외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하선장소 기재 란에 보세구역외장치허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재전송하시기 바 랍니다
- Q7. 입항전보세운송신고 시「보세운송 출발지와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하선신고 삭제 후 입항전보세운송신고를 진행하고 다시 하선신고를 하시기 바랍 니다.
- Q8. 하선기간 연장 신청 시 「담당세관/과 아니므로 수신된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여 신고세관과 과 코드를 확인 후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세관은 「030-10 입니다.
- Q9. 관리대상지정여부:Y[검사완료-적하목록기재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 A. 세관에서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적하목록 신고내용과 다른 사항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관리대상화물 검사부서 화물정보분석과에 적발내용을 확인하여 해 당 사항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 Q10. 수입화물진행정보 인쇄시「에러코드:1020030013보고서를 로딩하면서 예외가 발생하였습니다」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도구〉인터넷옵션〉고급탭〉[서버의인증서해제확인] 체크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 Q11. 입항적하목록 부분 재전송 후 「해당 건은 이미 보완 마감 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세관에서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 정정하시면 됩니다.
- Q12. 적하목록 전송 시「사용정지된 화물주선업자부호입니다. 세관에 부호를 확인 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부호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Q13. 적하목록 전송 시「M BL 반입예정장소를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기재된 반입예정장소(=배정장소) 부호가 만료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부호입니다.
- Q14. 입항적하목록 접수 전송 후 「본세관, 과는 적하목록문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세관. 과를 확인하십시오 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여 신고세관과 과 코드를 확인 후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세관은 「030-27 입니다.
- Q15.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건이 세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A. 전송시「접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미승인(심사대기), 승인, 기각 또는 서류제출상태로 통보됩니다.
- Q16.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 「정정전 내역(품명)이 적하목록과 상이합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정정전 내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이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상태입니다.
- Q17.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입항보고 제출건이므로 입항보고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운항정보는 감시부서에 입항보고를 정정하면 자동반영 됩니다.
- Q18.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 「수입전 물품반출신고수리된 건으로 적하목록 정정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수입신고수리내역이 존재하는 화물은 세관에서 직권정정만 가능합니다.
- Q19.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해당 MRN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적하목록 정정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에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 Q20.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이미 접수된 제출번호입니다. 새로운 제출번호를 사용 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이미 접수된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건이 세관에 심사중에 있으며 중복제출은 불가합니다.
- Q21.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 시 「House BL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정, 삭제할 수 출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출항적하목록 전송과정에서 BL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House BL을 추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Q22. 인천세관(020)에 제출하여야 할 적하목록을 부산세관(030)으로 잘못 제출하였습니다.
- A. 부산세관에 적하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천세관으로 적하목록을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Q23. 적하목록을 제출했는데 이번 항차로 입항/출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하목록을 취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전산으로 적하목록 취하신청을 하고, 적하목록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 면 됩니다.
  - ※ 적하목록취하신청서는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검색 → 행정규칙 항목에 표시된 고시 클릭 후 좌측상단「별표/서식」 클릭(적하목록 관련 양식 수록) → 별지제8호의 2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Q24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했는데 처리상태가 '기각'입니다
- A. 기각 사유를 확인한 후 재신청하고 서류제출 대상이라면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Q25. 적하목록 정정신청 후 기각되어 다시 정정신청을 하는데 「기 심사된 자료입니다」 라고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 A. 기각 처리된 정정 신청 건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시고 새로운 일련번호로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Q26. 적하목록 정정내역을 실수로 잘못 전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세관 적하목록 정정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Q27. House BL 추가 신청을 전송했더니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선사 BL타입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선사에 Master BL타입을 CONSOL로 변경하여 진행하시고, 컨테이너가 이미 입 항반입된 경우는 입항반입을 삭제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Master BL의 타입이 SIMPLE인 경우로 House BL이 추가 될 수 없습니다

# Q28. 한 BL에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중 일부만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장소가 지정장치장으로 되었는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지 않은 컨테이너도 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해야 하나요?

A.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컨테이너만 M BL에 남겨두고,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별도로 M BL추가를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하선 후 M BL추가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Q29. 1개의 Master BL에 1개의 House BL로 신고를 했는데 화주가 BL을 나눠서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A ① 컨테이너 한 대를 여러 BL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 된 BL의 중량·수량을 정정하고 나눠지는 BL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송·수하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BL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② 컨테이너 단위로 BL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 송 ·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화물관리번호 분할로 진행 가능하며 세관 화물 반출입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송 · 수하인이 변경되면 ①과 동일합니다.

#### Q30.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전송했는데 체화된 물품이라고 전산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A. 체화 화물은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전산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세관에 정정신청 서, 사유서, BL정정 전·후, INVOICE, PACKING LIST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Q31. 부두직통관으로 수입신고수리후 물품을 반출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창고에서 개 장을 해보니 수입신고 내역과 중량·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하목록정정이 가능한가요?

A.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된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정정을 하시려면 우선 수입신고 (수입과)와 납세신고(심사정보과) 부서에 정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정정이 가능하다면 적하목록 정정 담당자에게 정정신청서, 사유서, BL정정 전·후, INVOICE, PACKING, 창고명의 입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32. 입항반입 후 House BL을 추가하려 하는데 Master BL타입이 SIMPLE입니다. BL 타입을 CONSOL로 변경 시 반입관련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House BL 추가 시 Master BL이 입항반입 상태면 자동으로 입항반입이 되지 않아 보세운송이나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입항반입을 삭제하고 BL타입 정정한 후 House BL 입항반입을 재신고 하여 야 바랍니다.

#### Q33.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오류메시지를 통보받았습니다.

A. 품명 오류통보 BL을 제외한 그 밖의 오류통보 BL은 적하목록 제출에서 누락됩니다. 반드시 적하목록 전송프로그램에서 오류내역을 확인하고 적하목록 제출을 마 강하여야 합니다

#### Q34.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이미 선적된 수출신고내역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확 인되었습니다.

A. 다른 BL에 신고된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수출신고번호를 다시 확인 후 관련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Q35. 적하목록제출을 했는데 수출이행내역에 'N'으로 되어있습니다.

A. 정상적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한 경우 수출이행내역은 적하목록 심사완료 다음날 반영됩니다. 통상 출항마감 다음날부터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이 누락된 경우는 BL추가 신청을 하시고, BL은 있으나 수출신고서상 중량·수량이 불일치 하는 경우는 정확한 중량·수량을 확인하고 BL을 정정하거나 수출신고내역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Q36. 수출신고내역과 중량·수량이 불일치로 수출이행내역에 N 으로 표기되어 있어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여전히 수출이행내역에 '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A BL의 중량·수량만 정정하고 수출신고 관련번호의 중량·수량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출신고 관련번호의 중량 · 수량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37. BL상 중량·수량이 정정되어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선적 포장개수 합은 통관 포장개수 합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 습니다.

A. BL 중량·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수출신고서의 중량·수량이 먼저 정정 되어야합니다. 수출과에 수출신고서를 먼저 정정하고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Q38. House BL추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House BL의 포장개수 합은 Master BL의 총 포장개수 합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선사에 요청하여 Master BL의 중량·수량을 먼저 정정하고 House BL을 추가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 Q39.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면허일자가 출항일자 이후 건입니다」 오류메 시지를 받았습니다

A.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수리전 내국물품 상태에서 선박에 무단적재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적하목록정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40. 출항적하목록 BL번호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 A. 정정할 수 없습니다. BL을 삭제한 후 BL을 추가하여 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항적하목록은 입항적하목록과 달리 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BL번호 정정 ② 화물구분 정정(E↔R) ③ BL타입 정정(S↔C↔E)

## Q41. 수출신고가 2건으로 수리됐는데 그 중 일부를 동시포장 하였습니다. 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수출신고번호를 넣고 동시포장 여부에는 'A'를 공통으로 기입한 다음 동시포장 개수를 넣고 선적포장 개수와 선적중량은 해당되는 수출신고필증의 포장개수와 중량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적하목록 포장개수는 (선적포장 개수의 총합 - 동시포장 개수)이며 중량은 총중량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적하목록 포장개수 9개(10(선적포장합)-1(동시포장개수)). 중량 900KG일 경우

수출신고 관련번호	동시포장 여부	동시포장 개수	선적포장 개수	선적중량 (KG)	분할선적 여부	분할선적 횟수
フ <b>ト</b> XXX	А	1	3	300		
나XXX	А	1	7	600		

#### Q42. 분할선적 시 수출신고 사항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수출신고번호 입력 시 분할선적 여부에 'Y'를 표시한 후 실제 선적포장 개수와 선적중량을 입력하고 분할선적 회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 해상화물 적하목록 길라잡이

인 쇄:2018.8.

발 행:2018.8.

발행처 :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4가 17번지)

TEL: (051) 620-6131~6136

FAX: (051) 620-1128~9

기 획: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 문흥호

편 집:양기근, 김성열, 한창수, 이은정, 하정훈,

전용희, 김유미, 류보람, 박서연

감 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인천세관, 울산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평택세관